

※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류제출을 사전 방문 예약제로 진행합니다.

※ 서류제출 시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을 위한 필요 서류 작성도 동시에 진행되니 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(당첨자 외 동반 1인 입장 가능)

## □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

| 구 분       | 일 시   |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당첨자 서류 제출 | 2021. 07. 23(금) ~ 2021. 07. 29(목) 10:00 ~ 17:00 |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86<br>더샵 수성오클레어 견본주택 |
| 정당계약      | 2021. 08. 01(일) ~ 2021. 08. 04(수) 10:00 ~ 16:00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서류             | 발급 기준  | 확인 사항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공동 서류        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| 본인  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인감증명서 / 인감도장      | 본인   |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아파트 계약용).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계약 체결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      | 본인   |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필수 서류<br>(본인)          | 주민등록표초본(상세)       | 본인   |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| 본인   |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  | 본인   |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표시, 기록대조일은 2020.07.02 ~ 2021.07.02까지 설정 →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서약서               | 본인   | 견본주택에 비치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     | 본인   | 견본주택에 비치  |
| 배우자<br>분리세대            | 주민등록표등본(상세)       | 배우자  |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 한하며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  |
| 가점제<br>당첨자<br>해당 서류    | 주민등록초본<br>(전체 포함) | 피부양<br>직계존속  |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비속  |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<br>[주소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입국사실증명원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존속  |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<br>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자녀   |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<br>- 30세 미만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<br>- 30세 이상 미혼 자녀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| 본인   |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비속  |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"상세"로 발급  |
|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           | 배우자               |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)<br>- 구성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피부양<br>직계존속       |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해당자<br>추가 서류           | 복무확인서             | 본인   |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<br>-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을 명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해외체류 증빙서류         | 본인   |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<br>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|
| 제3자<br>대리인 신청서<br>추가사항 | 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      | 본인   |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(용도 : 서류제출 위임용).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임장               | 본인   |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신분증               | 대리인  |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 |

※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